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동차 수출업자 등록제 도입 〉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86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제2210086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자동차 수출업자 등록제 도입(안 제65조의3 신설 등)	3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86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종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4. 24.
3. 회 부 일 : 2025. 4.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자동차의 품질과 이미지가 향상됨에 따라 매년 중고자동차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기준 중고자동차 수출은 약 64만 대, 수출액 6조원에 달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수출업은 행정관청의 허가나 등록·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금까지 중고자동차 수출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중고자동차 수출은 일자리 창출 및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과 함께 정비·튜닝·부품공급·쇼링, 금융 등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가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위한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육성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자동차 수출업자 등록제 도입 등(안 제65조의3 신설 등)

개정안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중고자동차의 수출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말소등록) ① (생략)	제13조(말소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u>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제65조의3 제1항에 따라 자동차수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수출업자”라 한다)----- ----- ----- ----- -----.
③ ~ ⑪ (생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생략)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② ----- ----- -----

현행	개정안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u>수출하는 자에게</u> 판매할 수 없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⑤ (생략)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u>수출하는 자에게</u>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2. ~ 5. (생략) ⑦ ~ ⑩ (생략) <u><신설></u>	----- -----<u>자동차수출업자</u> <u>에게</u>-----.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1의2. ----- ----- -----<u>자동차수출업자에게</u>----- ----- 2. ~ 5.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65조의3(자동차수출업의 등록) ① <u>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수출하는 사업(이하 “자동차수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③ <u>자동차수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수출업”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3”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수출업자”로 본다.</u>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① -----매매, 수출(신조차와 이륜자동차의 수출은 제외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

현행	개정안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6. ~ 11. (생략) ④ ~ ⑥ (생략)	-----자 동차수출업자에게----- 6. ~ 11.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수출업의 등록에 관한 경 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신 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수출하고 있는 자는 제65조의3제1항 에 따라 자동차수출업을 등록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 개월 이내에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수출업을 등록하여야 한 다.

나. 검토의견

최근 우리나라의 중고자동차 수출대수를 살펴보면 2024년 약 63만
대로 2015년 약 21만대 대비 3배 증가하였으며, 수출금액 규모로는
2024년 약 50억 달러(약 6조원)로 2016년 9억 달러(약 1조원)에 비해 5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 최근 10년간 중고자동차 매매·수출 규모 추이 >

연도(년)	수출규모	
	대수(대)	금액(천달러)
2015	208,913	970,356
2016	410,123	1,717,458
2017	287,901	986,328
2018	360,114	1,081,342
2019	469,876	1,381,612
2020	387,637	1,244,601
2021	467,038	1,972,948
2022	404,653	2,958,083
2023	638,723	4,779,232
2024	627,875	5,093,89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품목별 수출)

아울러, 개발도상국 및 전환기 경제국가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 자동차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중고자동차 수출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크며,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수출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¹⁾²⁾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은 현행법상 별도의 허가나 등록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고, 세금 탈루, 사기 등 중고자동차 수출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1) 김천곤, 「중고차 수출 시장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24. p.19, p.47.

2) 우리나라의 중고자동차 수출 대상 지역은 주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 대부분 국가 내 자동차 구성이 중고자동차 중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임.

한편, 현행법 제68조의9³⁾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의 설치·육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산업의 신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고자동차 수출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3)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율적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
2. 주요 자동차서비스 관련 시설 현황의 조사 및 분석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수요 및 입지 분석
4.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5.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개정안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수출업에 등록한 수출업자의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정지처분, 미등록 수출업자의 수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도 함께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상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의무사항, 미등록시 벌칙, 행정처분 근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상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 관련 규정 >

※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 제공(현행법 제65조의 2)

제65조의 2 : 등록 근거, 의무사항

제81조 : 무등록시 벌칙 조항(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6조제2항 : 시군구청장의 사업 개선 명령 근거

제66조제4항 : 의무사항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제72조 :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에 대한 업무 보고 근거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출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검토는 관련 기관(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또한,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록제 시행을 위해서는 등록제도 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 수출 시 상태 점검절차 등 중고자동차 수출 전반에 대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현재 중고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하며,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 및 상태 점검 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수출차량에 대한 품질 관리 등이 어려운 상황임.⁴⁾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출 중고차 상황 파악,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으로, 등록제 도입에 앞서 수출 중고차 산업 전체에 대한 정책 연구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록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수출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록제 시행 시 등록에 필요한 시설·자본 등의 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등록기준을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음.

4)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본은 중고차 수출시 일본자동차검사협회에서 수출 전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나.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수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말소차량 관리, 불법주차 및 불법해체방지 등 수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현 법안은 등록근거만 마련되어 있어 등록된 자에 대한 의무(준수사항), 취소·정지요건, 무등록 수출에 대한 처벌근거 및 행정처분 등도 동시에 신설될 필요가 있음.

한편, 수출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검토는 관련 기관(산업부, 관세청, 수출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 도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대통령령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함.

< 자동차관리법 상 관리사업자 및 기타 업 등록요건 위임 현황 >

관리사업자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법 제53조제1항	시행규칙에 위임
자동차경매장	법 제60조제2항	시행규칙에 위임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법 제65조의2제1항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법 제58조제2항	시행규칙에 위임

2)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수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등록기준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과도한 제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 있음.

3)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중고차 수출 업종이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형 시스템의 정착이 중요한 시점으로, 현 등록제 도입은 기득권 세력의 권익 추구, 심각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수출 중고차 상황 파악,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으로, 등록제 도입에 앞서 수출 중고차 산업 전체에 대한 정책 연구를 우선 추진할 필요 있음.

4) 한국e모빌리티재활용협회

중고차 수출 업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중고차 수출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포함되어 집적화 될수 있도록 지원하면 수출 효율성 제고, 산업활성화 기대가 예상됨.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

최근 10년간(2015~2024) 중고차 수출현황

년도	차종별 수출규모						계	
	승용		승합		화물			
	대수	수출액 (천불)	대수	수출액 (천불)	대수	수출액 (천불)	대수	수출액 (천불)
2015	144,541	646,660	16,900	123,158	47,472	200,538	208,913	970,356
2016	163,651	662,697	16,627	114,474	49,567	163,116	410,123	1,717,458
2017	213,091	691,917	19,837	128,485	54,973	165,926	287,901	986,328
2018	279,830	795,027	17,845	118,081	62,439	168,234	360,114	1,081,342
2019	368,088	1,029,701	20,258	122,501	81,530	229,410	469,876	1,381,612
2020	307,453	974,978	13,262	75,900	66,922	193,723	387,637	1,244,601
2021	372,651	1,680,881	14,263	82,932	80,124	209,135	467,038	1,972,948
2022	335,444	2,706,079	13,255	100,489	55,954	151,515	404,653	2,958,083
2023	557,594	4,472,602	15,355	115,015	65,774	191,615	638,723	4,779,232
2024	534,982	4,772,263	15,927	104,468	76,966	217,162	627,875	5,093,893

* 출처: 한국무역협회 차종별(HS Code 8702~8704, 건설기계 제외) 통계